영주시 공고 제2023 - 632호

「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영 주 시 장

#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용역과제 심의대상 변경 및 용역과제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고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

## 2. 주요내용

가. 용역과제 심의대상 변경(안 제3조)

나. 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(안 제4조)

다. 위원회의 기능 강화(안 제6조)

라.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회 및 서면 심의 조항 신설(안 제8조)

마. 용역의 통합 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근거 명시(안 제13조)

바. 용역실명제 관련 사항 신설(안 제13조의2)

사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수당, 해촉 관련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준용(안 제14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
연락전화 : (054)639-6033
E-mail : fly0610@korea.kr, FAX : (054)639-602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#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종합기술용역” 이라 함은”을 ““종합기술용역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
1. 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학술용역
2.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종합기술용역
3.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
4. 국·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
5. 예산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

6.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

③ 당초 용역심의 결과보다 용역비가 30%이상 증가된 사업, 또는 심의 후 1년 이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1인”을 “11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용역의 계획, 용역기간,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
5.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

제8조제2항 중 “3분의2 이상의”를 “과반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・연관 과제는 통합 발주 방안을 검토해야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용역실명제)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국장, 실・단・과장, 담당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하며, 직속기관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.

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
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

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

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 및 위촉해제, 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1>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 뜻은 ----------. |
| 1.“용역”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조사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시운전, 평가, 자문, 지도, 사업,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 | 1. ---이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|
| 2.“학술용역”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・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・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. | 2. -------이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|
| 3.“종합기술용역” 이라 함은 공항, 도로, 철도, 하천, 수력, 상・하수도, 관개,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. | 3. “종합기술용역”이란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|
| 4.“공사설계용역” 이라 함은 건설, 통신,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. | <삭 제> |
| 5.“사업집행용역” 이라 함은 도시 | <삭 제> |

| | |
|---|---|
| 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. | |
| 제3조(용역과제 심의대상)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br>1.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<br>2.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<br>3.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또는 용역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| 제3조(용역과제 심의대상) ①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 |
| <신 설>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<br>1. 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학술용역<br>2.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종합기술용역<br>3.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|

| | |
|---|---|
| | 4. 국·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<br>5. 예산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<br>6.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|
| <신 설> | ③ 당초 용역심의 결과보다 용역비가 30%이상 증가된 사업, 또는 심의 후 1년 이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. |
|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제4조(구성) ① ---------- 11명 ---------- 구성하되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.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|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 한 차례만 ----------.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기능)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 제6조(기능) ----------. |

| | |
|---|---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4. 용역의 계획, 용역기간,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|
| <신 설> | 5.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|
| 4. (생 략) |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 |
| 제8조(회의) ① (생 략) | 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② ---------- 과반수 ----------. |
| <신 설> |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br>1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<br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|
| ③ (생 략) |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|
| 제13조(용역결과 관리) (생 략) | 제13조(용역결과 관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·연관 과제는 통합 발주 방안을 |

| | |
|---|---|
| | 검토해야한다. |
| <신 설> | 제13조의2(용역실명제)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<br>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국장, 실·단·과장, 담당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하며, 직속기관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<br>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.<br>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<br>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<br>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<br>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
| 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| 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해제, 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|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| | |
|---|---|
| 자치법규명 |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|
| 검토사항 | |
| 주요내용 | 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·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<br>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 |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의 견<br>제출자 | 소속 또는 주소 | | 연 락 처 | |
| | 성 명 | | | (서명 또는 날인) |